

1. 개정이유

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개정('25.4.22)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·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·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

2. 주요내용

가.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·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신설
(안 제6조)

- 1) 기후변화가 수산업·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
(이하 기후영향평가등)에 대한 조사·평가의 내용을 규정
- 2) 기후영향평가등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·대상 및 방법
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- 3)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방법을 규정
- 4)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수산업·어촌 기후영향평가
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공표하도록 함
- 5)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의 공표 방법에 대해 규정

나. 수산업·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(안 제7조)

- 1) 수산업·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(이하 위원회)에서는 기후

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, 해양수산부
소속으로 규정

2) 위원회의 구성, 임기 및 운영 기준을 명시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합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5. 00. ~ 6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·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)

①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·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·평가(이하 “기후영향평가등”이라 한다)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수산업·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
2. 어업·양식업의 적지(適地)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
3. 재난·재해 및 수산생물질병·전염병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
4. 수산자원의 다양성 및 변동성에 관한 사항
5. 어가인구, 소득 등 어촌의 변화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수산업·어촌 분야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 등에 대한 조사·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는 그 시기·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.

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,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

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수산업·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

제7조(수산업·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) ① 수산업·어촌의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업·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, 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
2. 기후·생태·수산업·어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대학·연구소·국제기구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: 6명 이내

나. 단체·행정기관·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

사하였던 사람: 5명 이내
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⑦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(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· 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·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 · 평가(이하 “기후영향평가등”이라 한다)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수산업 · 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</u> <u>2. 어업 · 양식업의 적지(適地)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</u> <u>3. 재난 · 재해 및 수산생물질병 · 전염병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</u> <u>4. 수산자원의 다양성 및 변동성에 관한 사항</u> <u>5. 어가인구, 소득 등 어촌의 변화에 관한 사항</u> <u>6. 그 밖에 수산업 · 어촌 분야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 등에 대한 조사 ·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
<신 설>

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는 그 시기·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.

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,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수산업·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

제7조(수산업·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) ① 수산업·어촌의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

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업·어촌
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(이하
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
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
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양수산부
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
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
부 수산정책실장이 되며, 위원은
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, 어업
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
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
2. 기후·생태·수산업·어촌
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
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람

가. 대학·연구소·국제기구
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
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
재직하였던 사람: 6명 이내

나. 단체·행정기관·사업체

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
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
람: 5명 이내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문위원
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
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
를 해산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
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
다.

⑦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
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
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
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
결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
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
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
다.